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⑦동일 조항)

-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수역에 농약 및 가축분뇨를 버리거나 유출·방치하지 않을 것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 「하천법」 제50조제1항 및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 이용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량 등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시 허가 등을 받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할 것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⑦동일 조항)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한 퇴비액비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지 아니하고 액비살포 기준을 지킬 것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⑦동일 조항)

-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등을 하지 않을 것

⑯ 병해충 발생 신고(⑦동일 조항)

-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농지등 및 그 주변에 규제병해충,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할 것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③동일 조항)

-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제1항제1호 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출하연기, 폐기 등의 출하제한 명령 준수

참고 11 기본직불 준수사항 관련

☑ 기본직불금(넓은 의미의 '공익직불금')은 법 제5조에 따라 보조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법 제12조에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준수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 준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 (법 제19조제1항제6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 준수 의무 미이행자는 준수사항별 각각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 다수위반일 경우 각각 합산하되 최대 100%, 전년도 위반사항의 반복위반은 2배 적용

1 (이행점검 기관) 기본형 공익직불 관리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주관이며 지자체, 식약처, 농진청 등이 관련 업무를 수행

이행 점검기관	준수사항	관리방법	통합관리
농관원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이행점검시스템	기본직불 시스템 (등록정보,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 관리)
	생산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SafeQ	
	공익기능 관련 교육	이행점검시스템	
	농업경영정보 변경	이행점검시스템	
	공익활동(공동활동, 영농폐기물, 영농일지 작성)	이행점검시스템	
지자체	비료 사용기준(농진청 주관)	흙도람	
	유통·판매단계 농약등 안전사용	기본직불시스템	
	관련 법령 상 준수사항	기본직불시스템	

2 (이행점검 기간) 매년 전년도 10.1일부터 등록연도 9.30일까지

(시료수거일 등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

3 (점검대상) 이행점검 대상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 농관원 :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중 고위험군을 추출하여 점검대상 선정

▽ 지자체 : 관련 법령 위반자 중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4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관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기본직불금 전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및 과태료부과(법 제45조제1항제1호)

5 (준수사항별 감액) 17개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다만 '농지의 형상' 및 '농지의 기능 유지' 각각 구분하여 감액

대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	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①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① 농작물 경작·재배에 이용되는 농지분(휴경 포함)으로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 * (감액대상) 농지가 아닌 토지(산지, 초지 등), 불경지(미관리 및 방치 등), 주차장, 유지(저수지 등), 건축물·폐기물 적치, 골재 채취장, 양어장, 축사·돈사·양계장 및 그 부속시설, 주거시설·창고 등 건축물, 조경수가 식재된 정원 등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확인된 경우 ※ 다만, 이행점검 과정에서 등록된 농지 면적 중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면적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제외(10% 감액은 적용하지 않음) * 「농지법」 상 개량·생산·부속시설** 등으로 해당 면적이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으나, 농업에 이용되는 면적 ** 개량·생산·부속시설 : (1) 유지(웅덩이), (2) 양·배수시설, (3) 수로, (4) 포장된 논로, (5) 제방, (6)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내 토양 유지·관리가 되지 않은 농지 (7) 간이퇴비장, (8) 농막(20㎡이하, 주거목적 제외), (9) 농촌 체류형 쉼터(연면적 33㎡이하) (10) 간이저온저장고 (33㎡이하), (11) 간이액비 저장조(저장용량 200톤 이하) 등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하지 않은 농지분에 한정하여 지급을 제한하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②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②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③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④ 비료 사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⑦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⑧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⑨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⑩~⑰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⑩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⑪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⑫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⑬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⑭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⑮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⑯ 병해충 발생 신고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⑰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6 (이행점검 부적합 의견청취) 이행점검기관의 장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 등으로 부적합 결과 및 이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사항을 7일 이내 문서로 통보하고 10일 이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함(「행정조사기본법」)

- ▽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인 기본직불 등록자가 확인되고 의견청취가 완료 되면 즉시 '기본직불시스템'에 준수사항 부적합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
 - * 이행점검 기관에서는 최종 매년 10.30일까지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기본직불시스템에 입력 완료

7 (감액 관련 일반사항) 등록연도에 적용되는 총 감액 비율은 기본직접지불금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복수위반은 감액률을 합산하고, 반복위반은 2배 적용

- ▽ (복수위반) 준수사항 각각 위반한 경우 각각의 감액률을 합산
- ▽ (반복위반) 전년도 위반한 준수사항을 매년 반복적으로 위반하였을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률 적용
- ▽ (가중, 감경기준) 처분권자(지자체장)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액율의 1/2 범위에서 가중, 감경 가능
 - * (가중 사유)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 (감경 사유) ①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구분	농약 안전사용 미준수(A)	농지의 형상 위반(B)	감액 합계(A+B)
2022년	1차 10%	1차 10%	20%
2023년	2차 20%	2차 20%	40%
2024년	3차 40%	미위반	40%
2025년	4차 40%	1차 10%	50%

8 (감액처분 의견청취) 시·군·구에서는 지급대상자가 확정(9.30일)된 후 감액대상자에게 기본직불금 감액사항을 안내하고 10일 이상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행정절차법」 제21조)

- ▽ 감액 대상자에게 감액 사항에 대해 안내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안내문을 서면(원칙)으로 발송하되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 가능(「행정절차법」 제14조)
 - *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처분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 감액대상자에게 의견제출을 받았을 경우, 이행점검 기관에게 관련 자료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다만, 이행점검 기관이 준수사항 부적합에 대한 의견청취 행정절차가 완료된 경우 감액대상자의 의견을 인정하지 아니함.
- ▽ 감액대상자에 대한 의견청취는 시·군·구 지급개시일 전까지 완료

참고 12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 기본사항

☑ 기본직불금 등록사항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한 조사(법 제17조, 제41조)하고자 하는 경우 농관원, 지자체 등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관련 절차를 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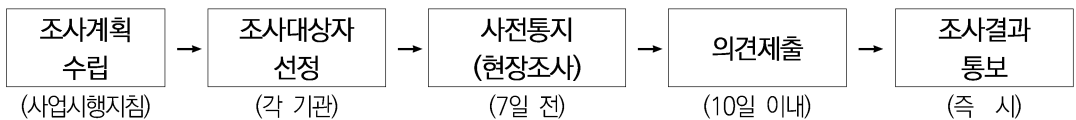
* 등록사항 실태조사, 재배조정 의무 부과자, 준수사항 이행점검, 현장점검, 부정수급신고 등

❶ (기본원칙) ▽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남용금지), ▽ 조사대상자를 선정,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중복조사 지양), ▽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 ▽ 비밀누설 금지, ▽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금지(「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❷ (조사시기) 등록사항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서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운영계획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되 아래의 사항인 경우 수시조사 가능

*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❸ (주요절차)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은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사후관리 등 법적 절차에 따라 수행



▽ (계획수립) 농식품부 및 농관원은 기본직불 등록자에 대한 현장조사, 준수사항 이행점검, 부정수급조사 등에 대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마련

* 다만,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특별점검, 부정수급 신고 등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조사 가능

▽ (사전통지) 조사원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내용을 7일 이내 사전통지하고 입회요구 등(법 제17조제5호)

▽ (의견제출) 조사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항에 대하여 10일 이내 기본직불자의 의견제출을 요청하여 소명

* 의견제출을 요청할 경우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위반으로 기본직불금 지급 등이 제한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안내

▽ (조사결과 통보) 행정기관은 기본직불 자격요건 현장점검, 준수사항 이행점검 결과를 ‘기본직불 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에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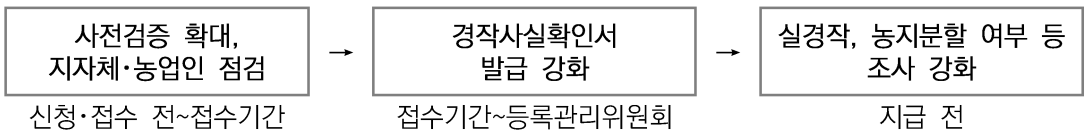
* 시군구 관리조직(담당부서)은 상이할 수 있음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① 농약 안전사용기준 (잔류허용기준)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품질관리법) 제61조, 「농안법」 제38조의2,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농관원, 지자체(식약청)에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시 ○ 조사결과 「품질관리법」 제61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단계의 경우 농관원 등은 「품질관리법」 제63조에 따라 폐기, 용도전환, 출하 연기 조치 - 유통·판매단계의 경우 지자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거·폐기하고, 도매시장은 「농안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내 전국 도매시장 출하 제한 - 아울러 지자체는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농약 등의 사용자에게 「농약관리법」 제2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다만, 비의도적 오염원인 성분(중금속, 장기 잔류성 농약, 미생물·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부적합인 경우 기본직불 감액 대상 제외 		
	▶ 「농약관리법」 제23조	▶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농약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②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식품위생법」 제7조	▶ (부적합 농산물 판매 등)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생담당
③ 안전성조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품질관리법」 제63조	▶ (처분명령 위반) 같은 법 제1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성 담당
	▶ 「농안법」 제38조의2	▶ (도매시장 출하제한 명령 위반) 같은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도매시장 담당
④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친환경농어업법」 제6조	▶ 별도 과태료·처벌 규정 없음 (토양검정 및 준수사항 부적합 기준은 사업시행지침에 기술)	기술센터

준수사항	관련 법(조항)	과태료·처분근거	비고
⑤ 비료의 적정 보관·관리	▶ 「비료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 (비료를 공공수역 유출) 같은 법 제27조제7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기술센터
⑥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농약 무단배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분뇨 무단배출)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⑦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하천법」 제50조제1항, 제50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3항	▶ (허가없이 하천수 이용)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하천수 관리)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환경담당
⑧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법」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20조제1항	▶ (부정한 지하수개발, 지하수보전구역 오염)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원상복구명령 미이행, 수질검사 미이행)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지하수 담당
⑨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 「가축분뇨법」 제10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제5호	▶ (가축분뇨·퇴비·액비 공공수역 유입,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유입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축산담당
⑩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금지	▶ 「생물다양성법」 제24조제1항, 제24조의4	▶ (생태계교란 생물 수입,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환경담당
⑪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신고	▶ 「식물방역법」 제30조의2제1항	▶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미신고) 같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농약담당

7 부정수급 방지

- 가. 기본직불 신청·접수 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전에 검증하여 부정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맞춤형 지원(법 제6조의2 신설)
- 나.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등에 대하여 실경작 여부 확인을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관리 강화(시행규칙 제11조 개정)
- 다. 조사의 범위에 부정수급 관련 사항을 강제하여 관계기관 책임 강화(법 제17조 개정)



① (사전검증 강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농지 등의 정보 및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사전에 자격요건 검증을 확대하여 적격인 대상에게 직불금 신청 안내

▽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사전에 정보를 수집 및 현행화하여 정보오류 최소화

*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주민번호)·농지(PNU)를 기준으로 주민정보, 토지대장, 과거 농지형상 점검사항, 농지대장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사전 현행화

▽ 지급대상 농업인·농지·소농자격요건에 대한 사전검증을 확대하고 적격인 농업인등(기존수혜자+신규대상자)에게 신청 안내하여 부적격자 신청 방지

- ▶ (제외대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사망·해외거주자, 부정수급으로 등록 제한 기간에 있는 농업인등, 농지대장(농지전용, 처분명령,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등), 직불금 기준연도 미충족 농지 등
- ▶ (사전안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충족 여부, 임대차계약 신규·갱신, 영농종사·농촌거주 3년, 신규신청자 및 관외경작자(50km 이상)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시설재배업·축산업 초과자 등

- 신청·접수 전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지급대상 자격요건 사전 검증 및 농업인 안내

* (종전) 신청·접수 이후 개인정보 활용 → (개선) 신청·접수 전 개인정보 활용

* (종전) 기존수혜자 중심 신청·접수 안내 → (개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중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모두 사전 안내

- 신청·접수단계에서 읍·면·동에서 자격요건을 추가 확인·검증*하여 부적격자 기본직불금 등록을 사전 차단

*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0.1ha 미만,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등

② (경작사실확인서 발급강화) 신규대상 등의 경작사실 여부 점검을 농지소재지 마을 단위로 확대하고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부정등록 차단

- ▽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총 3인 이상)이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경작사실확인서 발급
- ▽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50km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인지지원등급)는 농지소재지 이·통장 및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이 확인해주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규정
- ▽ 경작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기록이 없어 허위서류 제출 검토가 어려운 사항을 개선하여 이·통장은 발급 후 ‘발급대장 기록’하여 읍·면·동 제출
- ▽ 읍·면·동 등록관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작사실확인서 및 발급대장 교차점검
 - * 허위로 제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및 등록제한’ 처분

③ (불법임대차 차단) '23년 이후 신규·갱신이 필요한 임대차정보는 농지대장을 통한 증빙 방법으로 개선하여 단계적으로 불법 임대차계약 차단

- ▽ 농지법 개정·시행('22.8.18.)에 따라 공익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는 임차농지 신규·갱신이 필요할 경우 농지대장의 농지정보를 확인 후 등록

④ (현장조사 강화)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인지지원등급)를 중심으로 실경작 및 농지 분할 등을 위반하여 부정등록이 우려되는 대상으로 합동점검 추진

- ▽ 실경작 여부에 대하여 각종 검증정보를 활용하여 부정등록 우려자 중심으로 농관원·지자체 특별합동조사를 추진(등록신청연도 5~9월)
 -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위반, 관외경작자(50km 이상), 농자재구매이력無, 보조사업 불일치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I~인지지원등급) 등 대상

- 가.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행정처분
- 나.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 행정질서 교란, 자격요건 미준수 등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에서 제외

① (전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대상 농업인의 부정수급 발생, 자격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된 경우 직불금 전부를 환수 또는 미지급

- ▽ 기본직불 등록 연도에 직불금 지급 전에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제한 조치, 징역 또는 벌금 처분 등을 받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 ▽ 신규대상자 자격요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자격요건, 농업외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지급대상 농지면적합 1천㎡ 미만 등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19조제1항 제3호, 제4호)
- ▽ 농관원·지자체 등의 기본직불 관련 행정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 및 시행령 별표4 카목)
- ▽ 환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등의 기본직불 등록대상자 확정 전(9.30.)까지 전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제3호)

② (일부 미지급) 행정조사 결과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증빙자료 미보완), 재배조정 의무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 등으로 기본직불금의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 ▽ 행정조사 결과 지급대상 농지의 폐경확인, 농지전용, 타용도사용, ‘무단점유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 미제출 등이 확인된 경우(해당 필지 제외)
- ▽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대상 농지등에 한정하여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해당 필지 등분 제외, 법 제13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
- ▽ 준수사항 미이행자로 확인된 경우(각각 10% 감액, 법 제19조제1항제6호)

③ (착오 등) 농업인등 또는 행정기관이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법 제19조제1항제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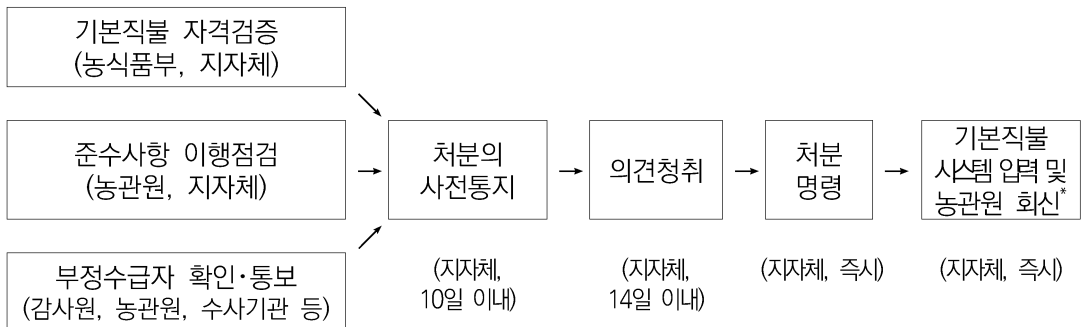
④ (과태료) ▽조사기관의 조사·수거·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비치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참고 14 부정수급, 환수 등 행정처분 절차

- ☐ 부정수급 처리, 환수 명령 등 행정기관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처분, 행정지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서 명시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행정조사 이후 '기본직불 자격요건 미충족'(등록거부),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 자격요건 미충족', '준수사항 미이행', '부정수급자 처분명령', '환수 명령' 등

1 (주요절차) 행정조사 결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 '의견제출'을 받아야 함



* 농관원으로부터 부정수급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장(처분권자)은 행정처분(환수, 등록제한 등) 실시 후 10일 이내 그 결과(처분일자, 처분종류, 환수금액 등)를 농관원으로 회신

- ▽ (처분의 신청) 동일한 행정조사 결과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된 경우 처분을 문서(또는 정보통신망)로 신청해야 하고 관련 기관(부서)에서 별도로 행정절차를 진행

- 아울러 농관원, 지자체(관련 법 소관부서) 등은 사전에 관련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기본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되는 사실을 고지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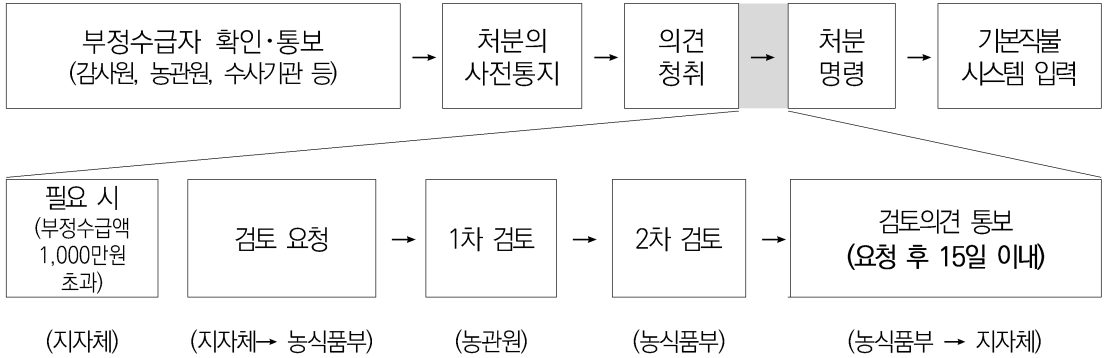
* (사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3조의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폐기·출하제한) → 「농약관리법」 제23조의 안전사용기준 위반(과태료 부과)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2조의 준수사항 위반(기본직불금 감액지급)

-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 지자체는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당 농업인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14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도록 안내

* ▽ 처분의 제목,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 의견제출 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간 등

2 (부정수급 처분절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수령하여 부정수금액(제재부가금 제외)이 1,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부정수금액 발생한 경우 지자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행정처분



▽ 지자체에서는 부정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고 사안이 복잡하여 농식품부의 의견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농식품부 사업부서(공익직불정책과)에 처분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붙임 신청양식 및 증빙서류 세출 / 증빙서류 내역은 신청양식에 기재

3 (환수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이후, 처분 당사자에게 환수액 등을 납부하도록 서면으로 통지

▽ 처분권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공공재정환수법 제4조)을 정하여 납부를 통지하며, 반환금액·처분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3년 이내) 결정 가능

* 다만, 분할납부하는 경우 공익직불법 제20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함(연 100분의 6)

** 환수 처분의 소멸시효는 부정수급 등 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지급된 이후 5년이 경과한 직불금은 환수 등 행정처분 불가

〈대법원 판례 2019.10.17.(2019두33897)〉

부정수금액을 반환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 소멸시효는 부정수금액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하므로, 반환명령일을 기준으로 이미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정수금액에 대해서는 반환명령이 위법하다.

4 (가산금 부과 및 강제징수) 처분명령 및 납부고지서 발부 후 납부 기간을 경과한 경우 독촉(서면)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시 강제징수

▽ 처분명령에 따른 환수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독촉(서면) 후 미납 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금으로 부과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연 6/100(월 기준 5/1000)을 부과하되 최대 60개월까지 부과 가능

〈가산금 부과 예시〉

- ※ (예시 1) 처분권자가 부정수급자 A에 대해 환수대상 금액 880만원에 대한 납입고지 '24.2.28.까지 하였으나, A가 '24.3.15에 환수대상 금액 880만원을 납부한 경우
→ '24.3.1.부터 '24.3.14.까지 기간(14일)에 대한 가산금 부과 = 880만원 X 14일 X 0.0164%(일할 이자율 = 6%/365일) ⇒ 20,252원 가산금 부과처분 추가 실시
- ※ (예시 2) 처분권자가 부정수급자 B가 대해 환수대상 금액 1,000만원에 대한 납입고지 '24.2.28.까지 하였으나, B가 '24.2.28.에 500만원을 납부하고 '24.3.30.에 500만원을 추가 납부한 경우
→ 납부기한 이후 미납된 500만원에 대하여 '24.3.1.부터 '24.3.29.까지 기간(29일)에 대한 가산금 부과 = 500만원 X 29일 X 0.0164%(일할 이자율 = 6%/365일) ⇒ 23,835원 가산금 부과
- ※ (예시 3) 부정수급자 C의 요청으로 부정수금액 3,000만원에 대하여 3차(각 1,000만원)에 걸쳐 분할납부 하는 경우(1차 납부: '24.3.31. 2차 납부: '24.6.30. 3차 납부: '24.8.31.)
→ 1차 납부를 제외한 2차 및 3차 납부 금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하여 부과통지 실시
→ '24.4.1.(1차 납부기한) ~ '24.6.29.(2차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 2,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2,000만원 X 90일 X 0.0164%(일할 이자율 = 6%/365일) ⇒ 295,890원
→ '24.7.1.(2차 납부기한) ~ '24.8.30.(3차 납부기한)까지 미납된 금액 1,000만원에 대한 가산금 부과 = 1,000만원 X 61일 X 0.0164%(일할 이자율 = 6%/365일) ⇒ 100,273원
→ 최종 가산금 396,163원 부과 = 295,890원 + 100,273원

▽ 부정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압류→공매(매각·환각)→배분(청산))

* 부정수급,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합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징수업무 위탁 가능(「국가채권관리법」 제14조의2)

- 부정수금액,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

5 (시스템 입력)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기본직불금 감액, 부정수급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한 환수 명령을 하였을 경우 '기본직불 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입력

*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Agrix) - 사후관리 - 부정수급관리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처분 적정성 등 검토 신청서						
신청 기관	신청기관					
	부서(과/팀명)					
	담당자 성명		직급		연락처	
부정수급 주요내용 요약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관련 법령조항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처분예정 내용 *계산식 포함	<input type="radio"/> 부정수금액(착오수급) 금액 : <input type="radio"/>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 - 부과사유 <input type="radio"/> 가산금 부과 금액 : - 부과사유 <input type="radio"/> 환수금액 : - 사유					
기한 및 방법, 납부자명 등	<input type="radio"/> 납부기한 : <input type="radio"/> 납부방법 : 일시납 / 분납(○회) <input type="radio"/> 납부자 성명 : - 주소 : - 경영체번호 :					
첨부 자료	- 필수 : 1.적발 확인서, 2.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 관련 검토문서, 3.처분 사전통지서, 4. 부정수급 관련 증빙서류 - 선택 : 5. 관계자(당사자 등) 의견서 등, 6. 기타 참고서류					

☐ 기본직불 등록자가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호) 엄격하게 행정처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구성요건상 행위자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을 기망하여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착오를 유발시켜 직불금 수령 등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 (착오등)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착오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환수

- ▶ 공익직불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라 지자체(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농업인(보조금 수령자)에게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간접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지자체가 농업인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령
- * 따라서 일반적인 보조사업자의 경우와 같이 보조금 교부, 교부결정 취소 등 절차가 불필요

1 (행정처분의 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직불금을 ① 등록한 경우 등록 취소/등록제한, ② 수령한 경우 환수/등록제한/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부과/정보공개 등

부정수급 종류(법 제19조제1항)	분류	부정 수금액	제재 부가금	등록제한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제1호)	등록	-	-	5년	3년
	수령	위반사항	5배	8년	5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등을 분할(제2호)	등록	-	-	3년	
	수령	위반사항	3배	5년	

▽ (부정수금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대상 농업인의 자격 요건을 위반한 경우 전액, 일부를 위반한 경우 위반으로 지급받은 금액

▽ (제재부가금) 부정수금액의 3배 또는 5배 부과

* 「공익직불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해당 사유와 직접 관련된 농지 등에 대하여 부과 → (면적 직불) 부정수급과 관련된 농지 지급 금액에 대하여 부과 / (소농 직불) 소농 직불 금액 전체에 대해서 부과

▽ (강제징수) 부정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징수

2 (검토) 부정수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식품부 주관 ‘처분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처분의 객관성 확보(필요시)